청주시 보호 종료 청소년 자립지원 방안 모색 토론회

일시 | 2021년 7월 15일(목) 오후 2시

장소 | 청주시의회 특별위원회실

주최 | 청주시의회 복지교육위원회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프로그램

14:00 개회

14:02 인사말 최충진 청주시의회 의장

김영근 청주시의회 복지교육위원장

손은성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

14:08 사회 오인배 충북참여연대 사회인권센터장

14:10 발표(25분)

보호 종료 청소년 자립지원 현황과 과제 /

최은희 충북연구원 연구위원

14:35 토론(각 7분, 50분)

송재범 충북혜능보육원 자립지원전담요원

이희태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 자립지원전담요원

김성민 브라더스키퍼 대표(영상출연)

이재숙 청주시 복지국장

류지봉 충북시민재단 상임이사

서재욱 청주복지재단 연구위원

임은성 청주시의원(청주시의회 복지교육위원회)

15:25 종합토론

15:40 폐회

보호종료 청소년1) 자립지원 현황과 과제

최은희(충북연구원 연구위원)

1. 보호종료 청소년과 자립

- 아동복지법 제16조1항(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보호중인 아동의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켜야 한다
- 아동복지법 제16조4항(보호기간 연장)
 - 대학 이하의 학교(대학원 제외) 재학 중인 경우, 직업관련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 해당 아동을 계속하여 보호·양육할 필요가 있다고 정하는 경우, 아동학대 재발이 의심되는 경우
- 자립지원 대상(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8조2항)
 - 가정위탁보호,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 중인 아동 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아동
- 자립은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독립 상태로의 전환
 - 갑작스러운 사건이 아니라 이미 예정된 과업이지만 가정보호 아동의 자립과 달리 빨리 다가옴
 - 시설에서 경험하고 배운 것에 기반하여 삶의 의미를 찾고 새로운 가능성을 확장해 나가는 과정
 - 시설에서의 생활경험은 퇴소 이후의 적응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침

2. 보호종료 청소년 현황

1) 보호종료 청소년 현황

- 보호아동(16세 이상)
 - 2019년 보호아동 : 전국 10562명, 충북 464명
 - 19세 이상 및 연장아동 : 전국 51.9%, 충북 49.5%

¹⁾ 본 고에서는 보호종료 청소년과 아동을 혼용하여 사용하며, 문헌 인용시 원문에 따라 보호종료아동으로 그대로 기술함

			전국					충북		
	16-18 세	19세 이상	연장 아동	일시 중지 아동	소계	16-18 세	19세 이상	연장 아동	일시 중지 아동	소계
양육	1722	1050	392		3164	62	42	22		126
시설	54.4	33.2	12.4		100.0	49.2	33.3	17.5		100.0
공동	539	416	82		1037	35	19	3		57
생활	52.0	40.1	7.9		100.0	61.4	33.3	5.3		100.0
가정	2727	1230	2317	87	6361	132	58	81		271
위탁	42.9	19.3	36.4		100.0	48.7	21.4	29.9		100.0
→1 1	4988	2696	2791	87	10562	229	119	106		464
계	47.2	25.5	26.4	0.8	100.0	50.4	26.2	23.3		100.0

자료: 아동권리보장원, 2020. 2019년 아동자립지원통계현황보고서

○ 보호종료아동

- 2019년 보호종료아동(만기퇴소+연장종료) : 전국 2587명, 충북 101명

- 시설유형별 : 가정위탁이 가장 많음

2019년	현원	만기퇴소	연장종료	계
아이 기사	전국	645	347	992
양육시설	충북	16	16	32
고도재하	전국	120	52	172
공동생활	충북	10	7	17
기저이타	전국	547	876	1423
가정위탁	충북	25	27	52
궨	전국	1312	1275	2587
계	충북	51	50	101

자료 : 아동권리보장원, 2020. 2019년 아동자립지원통계현황보고서

- 최근 5년간 충북의 시군별 보호종료아동

- 2018년 164명을 정점으로 감소. 125명~164명 사이
- 지역별, 시설유형별 : 청주시에 가장 많이 거주하며, 가정위탁이 가장 많음

	2020년					201	9년			201	8년			201	7년			201	6년	
구분	계	아동양육지설	공동생활가정	가 정위 탁	계	아 샤양왜국절	공동생활가정	가 정 위 탁	계	아동양육지설	공동생활가정	가 정 위 탁	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 정 위 탁	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 정위 탁
청주	66	21	14	31	76	23	17	36	80	30	9	41	73	35	5	33	68	19	6	43
충주	11	3	1	7	13	5	1	7	16	8	1	7	7	2	0	5	15	2	0	13
제천	5	2	1	2	5	3	0	2	7	5	0	2	4	3	0	1	4	2	0	2
보은	4	0	0	4	2	0	0	2	3	0	0	3	2	0	0	2	1	0	0	1
옥천	4	0	1	3	13	6	2	5	10	4	3	3	13	7	2	4	10	6	0	4
영동	4	0	0	4	2	0	0	2	10	0	0	10	9	0	0	9	3	0	0	3
증평	3	0	0	3	1	0	0	1	0	0	0	0	1	0	0	1	0	0	0	0
진천	10	1	1	8	5	1	0	4	11	0	0	11	17	0	0	17	6	0	0	6
괴산	6	0	0	6	6	0	0	6	4	0	0	4	1	0	0	1	4	0	0	4
음성	7	3	0	4	12	7	0	5	17	10	0	7	8	5	0	3	12	11	0	1
단양	5	-	3	2	4	-	2	2	6	-	5	1	2	-	1	1	2	-	2	0
계	125	30	21	74	139	45	22	72	164	57	18	89	137	52	8	77	125	40	8	77

주. 각 시군별 정보공개자료 집계. 2019년 계와 아동권리보장원 보고서와 차이가 있음

○ 자립지원계획수립아동(16-18세)

- 자립지원계획수립 : 전국 97.1% > 충북 94.7%

- 시설별 : 공동생활가정의 수립률이 가장 낮음. 전국 81.4% < 충북 85.3%

20	19년	계획대상	계획수립	수립률
01 0 1 kd	전국	1709	1665	97.4
양육시설	충북	62	55	88.7
고도새하	전국	512	417	81.4
공동생활	충북	34	29	85.3
기자이타	전국	756	2702	99.9
가정위탁	충북	132	132	100.0
계	전국	1273	4784	97.1
/1	충북	228	216	94.7

○ 자립수준평가 대상자(보호종료 후 5년 이내)

-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자립수준평가 대상자 : 전국 12796명, 충북 530명

- 현황별 : 전국, 취업 > 연락두절 > 기타. 충북, 연락두절 > 취업 > 기타

- 시설별 : 가정위탁의 연락두절이 대부분

구	분	진학	취업	군입대	기타	연락두절	계
양육	전국	801	2565	52	1005	430	4853
시설	충북	24	99	1	43	19	186
공동	전국	158	271	25	113	109	676
생활	충북	7	19	0	5	1	32
가정	전국	404	2024	372	1644	2823	7267
위탁	충북	8	44	7	25	228	312
741	전국	1363	4860	449	2762	3362	12796
계	충북	39	162	8	73	248	530

자료: 아동권리보장원, 2020. 2019년 아동자립지원통계현황보고서

○ 자립수준평가 대상자 대학유형

- 4년제 진학자가 가장 많음. 전국 54.2%, 충북 43.6%

구	분	2년제	3년제	4년제	대학원	계
0F 0 1 1 M	전국	290	104	401	6	801
양육시설	충북	9	6	9	0	24
고도제하	전국	57	29	70	2	158
공동생활	충북	2	1	4	0	7
기저이타	전국	84	39	268	13	404
가정위탁	충북	1	3	4	0	8
개	전국	431	172	739	21	1363
계	충북	12	10	17	0	39

○ 자립수준평가 대상자 대학등록금 조달현황

- 국가장학금을 가장 많이 활용

- 자립정착금 : 전국 5.4% < 충북 8.9%. 자부담 : 전국 7.6%, 충북 7.1%

구	분	아마기미	구· 가 자 아 다 다 다	IT 하다. 차이라 기미	지자체지원그	하자그미대출	장학재단능	친이 처리 바라 그	자 립저야자그ㅁ	C D A	자 부 담	위탁가정	기 타	계
양육	전국	65	647	151	29	13	97	21	78	33	103	-	66	1303
시설	충북	2	16	3	0	1	4	0	2	0	1	ı	4	34
공동	전국	14	108	23	8	5	13	7	26	21	11	-	15	251
생활	충북	0	6	2	0	0	1	0	3	0	1	-	1	14
가정	전국	3	290	36	4	24	17	15	8	8	43	10	46	504
위탁	충북	0	6	0	0	0	0	1	0	0	1	0	0	8
계	전국	82	1045	210	41	42	127	43	112	62	157	10	127	2058
/1	충북	2	28	5	0	1	5	1	5	0	4	0	5	56

자료 : 아동권리보장원, 2020. 2019년 아동자립지원통계현황보고서

○ 자립수준평가 대상자 취업형태

- 정규직 비중이 높음. 전국 57.6% < 충북 69.1%

구	분	정규직	비정규직	계
010 11 kH	전국	1554	1011	2656
양육시설	충북	63	36	99
고드제하	전국	151	120	271
공동생활	충북	15	4	19
기저이타	전국	1093	931	2024
가정위탁	충북	34	10	44
ᆲ	전국	2798	2062	4860
계	충북	112	50	162

○ 자립수준평가 대상자 취업분야

- 전국 : 서비스직 31.1% > 전문직 18.9% > 사무직 10.3%

- 충북 : 서비스직 19.8% > 단순노무직 19.1% > 기계조작조립직 15.4%

구	분	관리직	전문직	사무직	서비 스직	판매직	농어업	기능직	기계조 작/조 립	단순 노무직	기타	소계
양육	전국	74	387	184	792	118	3	257	315	291	144	2565
시설	충북	2	10	4	21	4	0	15	15	23	5	99
공동	전국	4	42	19	84	19	0	24	28	31	20	271
생활	충북	0	1	2	3	1	0	4	6	2	0	19
가정	전국	44	490	297	637	72	7	77	141	134	125	2024
위탁	충북	3	10	7	8	1	0	0	4	6	5	44
	전국	122	919	500	1513	209	10	358	484	456	289	4860
ᅰ	²²	2.5	18.9	10.3	31.1	4.3	0.2	7.4	10.0	9.4	5.9	100.0
계	충북	5	21	13	32	6	0	19	25	31	10	162
	궁국	3.1	13.0	8.0	19.8	3.7	.0	11.7	15.4	19.1	6.2	100.0

자료: 아동권리보장원, 2020. 2019년 아동자립지원통계현황보고서

○ 자립수준평가 대상자 월평균소득(취업자)

- 2019년 최저임금(월/1,745,150원) 이하 소득자 : 전국 51.2% > 충북 42.0%

구	분	55만원 미만	55-80 만원	81-100 만원	101-130 만원	131-150 만원	151-170 만원	171-200 만원	201-250 만원	251만원 이상	계
양육	전국	29	72	137	183	272	444	756	505	167	2565
시설	충북	2	5	5	4	5	18	31	24	5	99
공동	전국	6	2	22	23	31	56	79	42	10	271
생활	충북	0	0	2	1	1	6	5	3	1	19
가정	전국	37	60	103	197	344	467	542	221	53	2024
위탁	충북	1	0	2	2	2	12	15	8	2	44
	전국	72	134	262	403	647	967	1377	768	230	4860
71]	心 玉	1.5	2.8	5.4	8.3	13.3	19.9	28.3	15.8	4.7	100.0
계	충북	3	5	9	7	8	36	51	35	8	162
	궁푹	1.9	3.1	5.6	4.3	4.9	22.2	31.5	21.6	4.9	100.0

○ 자립수준평가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여부

- 수급자 : 전국 31.0% > 충북 29.6%

구	분	수	급	בןם	· 구급	총	계
양육	전국	1479	33.8	2892	66.2	4371	100.0
시설	충북	42	25.9	123	74.1	166	100.0
공동	전국	224	41.3	318	58.7	542	100.0
생활	충북	9	29.0	22	71.0	31	100.0
가정	전국	1081	26.5	2991	73.5	4072	100.0
위탁	충북	29	37.7	48	62.3	77	100.0
궤	전국	2784	31.0	6201	69.0	8985	100.0
계	충북	81	29.6	193	70.4	274	100.0

자료: 아동권리보장원, 2020. 2019년 아동자립지원통계현황보고서

○ 자립수준평가 대상자 주거형태

- 정부지원시설 vs 정부지원 외 거주 비중 : 전국 37.6% < 62.4%, 충북 44.9% < 55.1%

- 정부지원 주거형태 중 LH 비중 : 전국 87.2% > 충북 82.9%

- 정부지원 외 주거형태 중 월세 비중 : 전국 34.9% < 충북 36.4%

			7	정부지원]							정부지	원 외					
구	분	LH	자립 지원 시설	공동 생활 가정	기타	소계	전세	월세	자가	친인처	기 숙 사	고 시 원	친구집	귀가	위탁 가정	기타	소계	계
야 육 시 설	전 국	2223	228	37	96	2584	82	666	18	134	343	14	124	252	-	152	1785	4369
시 설	충왕	80	16	1	3	100	6	24	0	1	14	1	2	15	-	3	66	166
고o나o새o화	전 국	277	12	5	13	307	25	110	5	17	28	1	4	21	-	24	235	542
생활	충북	13	0	0	0	13	1	5	1	1	4	0	0	4	-	2	18	31
가정	전 국	531	4	3	45	583	88	1148	77	384	244	11	49	77	1204	206	3488	4071
가 정 위 탁	충북	9	1	0	0	10	5	26	7	10	8	1	0	1	9	0	67	77
계	전 국	3031	244	45	154	3474	195	1924	100	535	615	26	177	350	1204	382	5508	8982
/1	충발	102	17	1	3	123	12	55	8	12	26	2	2	20	9	5	151	274

2) 보호종료 청소년 자립지원 어려움(선행연구 기반)

○ 자립 전 단계

구분	내용
자립에 대한 관심 부족	- 막연함. 본인 일이 아닌 것 같고 실감나지 않아 관심 없음 - 자립프로그램에 형식적으로 참여하여 자립 자신감 떨어지고 불안감 증가 - 게임하고 싶은 데 불러 짜증난 상태라 교육 내용 들리지 않음 - 집단프로그램 거부감

○ 자립단계

구분	내용			
심리, 정서	- 외로움, 불안감, 우울감, 고립감 등 - 자립준비 부족으로 진로결정을 보류하거나 비자발적인 선택. 동기 결여된 선택시 퇴소 후 혼란스러운 감정으로 방황하거나 위기 경험			
- 사회적 편견에 부딪침 - 주거마련, 생계유지, 의료비 부담 경제 - 자립 연차가 길어질수록 심리적 불안이 높아지고, 자립생활 유지 능력이 약화되어 기초생활수급자로 살아감				
원가족	- 미해결된 갈등으로 인한 분노, 불안 - 이차적 단절 경험, 상실감, 가족생계 책임지는 경우 발생			
직장	- 직장 적응(안정적 고용상태 유지 어려움) - 인간관계, 직장내 상사, 동료 관계 어려움			
자립교육과 현실의 갭	- 제한된 사회적 관계망으로 신변의 어려움 겪을 시 도움 청할 곳 없음 - 출산 및 양육문제, 범죄/약물중독, 성매매문제 - 대출, 부동산 활용 등			

○ 자립지원전담요원의 어려움

구분	내용
	- 업무량 과다, 직무수행에 대한 슈퍼비전 부재
어미카러	- 시간이 안맞아 근무시간 중 아동 면담 곤란(가정위탁센터)
업무관련	- 시설장(종사자)의 인식 부족 및 무관심
	- 예산 부족, 활용할 자원 부족
	- 아동의 참여동기 부족 및 참여시간 부족
아동과의 관계	- 아동의 연락두절(퇴소 후 사례관리 원하지 않음)
	- 자립지원 담당으로써 지속적인 관계 유지 어려움

3. 보호종료 청소년 자립지원 제도

1) 법률 및 조례

○ 법률 : 아동복지법 제38조~44조

- 지원내용

구분	내용
제38조	자립에 필요한 주거, 생활, 교육, 취업 등의 지원,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지원(자 산형성지원)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사후관리 체계 구축 및 운영 그 밖에 자립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시행령 제38조 자립생활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종사자에 대한 자립지원 관련 교육 주거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자립정착금 지급 생활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자립수당의 정기적 지급
제39조	15세 이상의 아동 대상 자립지원계획 수립
제40조	자립지원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사례관리 등의 업무 위탁
제41조	자립지원정책 효율적 수행을 위한 아동자립지원추진협의회
제42조	자산형성지원사업 실시
제43조	자산형성지원사업 대상 아동의 관리, 후원자 발굴 및 관리, 교육 및 홍보, 조사/연구 및 평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조례 : 충북 본청+11개 시군 X

지역	자치법규명	시행일자
서울	_	_
부산	부산광역시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	15.1.1
대구	대구광역시 보호대상아동 자립통합지원 조례	18.10.1
인천	_	_
광주	광주광역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19.10.15
대전	-	_
울산	울산광역시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	19.12.26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21.4.15

경기	경기도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	16.6.7 21.3.16
강원	강원도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21.7.2
충북	-	-
충남	충청남도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21.4.30
전북	전라북도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	22.1.1
전남	-	_
경북	경상북도 아동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18.1.1
경남	경상남도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17.2.9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아동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제추특별자치도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17.5.1 20.6.10

2) 지원정책

○ 개요

구분	지원명	지원내용		
	CDA	만18세 이후 사회진출시 자립자금		
경제	자립수당	생계비지원, 월30만원, 3년 이내		
	자립정착금 및 대학등록금	지자체별 상이		
	주거지원통합서비스	LH 매입, 전세임대주택, 일반월세주택(반전세 포함) 거주중인 자주거환경조성비(50만원), 사례관리(월20만원)		
주거	자립생활관	시설퇴소아동 중 취업 중인 자 우선 취업준비 중인 만18세~24세 이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년, 공공요금 정부/생활비 입소자 지불 상담, 정서, 자립 등 생활지원서비스		
	전세주택자금지원	LH임대주택. 지원자격유지시 2년단위 3회계약 연장		
	자립통합지원센터 (희망디딤돌)	2년, 1인 1실, 개별역량에 맞춘 자립통합사례관리 삼성전자임직원(후원)+사랑의열매(사업지원)+자립지원부(사업운영기 관)		

○ 자립정착금 및 대학등록금

(단위: 만원)

лн	자립정착금		대학등록금(생활안정자금)			
구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서울	500	500	500	300	300	300
부산	비장애) 500 장애) 700	비장애) 500 장애) 700	비장애) 500 장애) 700	실비	실비	실비
대구	500	500	500	200	200	200
인천	800	800	800	200	200	200
광주	500	500	500	_	_	-
대전	500	500	500	200	200	-
울산	500	500	500	500	500	500
세종	500	500	500	실비	실비	실비
경기	1,000	1,000	1,000	250	250	250
강원	500	500	500	200	200	200
충북	500	500	500	실비	실비	실비
충남	500	500	500	_	-	-
전북	500	500	500	200	200	200
전남	500	500	500	150	150	150
경북	500	500	500	200	실비	실비
경남	500	500	500	-	-	-
제주	500	500	500	300	300	300

자료 : 아동권리보장원, 2021. 2021 자립지원 업무매뉴얼 수정

- 충북 시군별 자립정착금 및 대학등록금

(단위: 만원)

구분	자립정착금	대학등	등록금
청주	500	200(실비지원)	
충주	500		2021년 부터 중단 / 중복지원 및 중복지원에 대한 환수 요구 등
제천	500	200(실비지원)	
보은	500	200(실비지원)	
옥천	500	200(실비지원)	공동생활가정 x, 쉼터 o
영동	500	200(실비지원)	
증평	500	200(실비지원)	2021년부터 지원
진천	500	200(실비지원)	
괴산	500	200(실비지원)	
음성	500	자부담액 지원	
단양	500	200(실비지원)	

주. 각 시군 정보공개에 따른 정리

- 충북 본청 지원 현황(2016-2020)

(단위: 명, 원)

13 =	년도 지원근거 사		지원근거 사업명 사업내용	수혜 아동	인당 금액	총예산			
인도			시합네 용	아동		계	국비	도비	
2016				107		40,000,000		40,000,000	
2017	호원버트		지원 취득 등 지역사회 로그	80		40,000,000		40,000,000	
2018	충청북도 아동학대	아동자 립지원 프로그 램운영		80		40,000,000		40,000,000	
2019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80		40,000,000		40,000,000	
2020	<u> </u>			정보제공	80		40,000,000		40,000,000
2021				80		40,000,000		40,000,000	
2020	아 <mark>동복</mark> 지법 제38	주거 지원	주거 지원	T[0] 2011120 0 X	30	2,500,000	149,884,000	119,907,000	29,977,000
2021	(자린지워) 통한서	(자립지원) 통합서 중입 시계전되글 중인 [32	4,700,000	208,168,000	166,534,000	41,634,000	

자료: 정보공개자료

○ 기타

구분	내용
자립형 그룹홈 (서울시)	주거 및 자립지원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이루며 살 수 있도록 지원 만24세 이하의 자로 대입, 취업 등으로 주거가 필요하며 자립의지가 확고한 자 2년. 필요시 1회에 한하여 2년 연장. 현재 13개 그룹홈 운영
주거금융지원사업	서민주택금융재단과 사회연대은행 (사)함께 만드는 세상 만38세 이하 보호종료청(소)년 또는 보호시설 거주 경험자 주거난을 겪고 있는 보호종료 청소년들의 주거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위해 임차보증 금 대출과 재무교육 및 주택임대차 교육을 지원
충북공동모금회 (충북아동복지협회)	자격증/수료증 취득 교육비 지원 진로직업탐색, 취업역량강화(진로취업준비교육, 산업체견학, 취업역량강화 캠프) 10개소 자립프로그램 지원

3) 전달체계

(1) 자립지원시설

		아	청소년자립지원관			
구분	자립지원 전담기관	자립지원시설 (자립생활관)	자립통합 지원센터 (희망디딤돌)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혼합형	비숙박형
서울	1	4		1	1	1
부산	1	1	1	1		
대구		2	1			1
인천				1	2	
광주	1	1	1	1		
대전		1		1		
울산		1				
세종						
경기	1		1	1	1	3
강원	1	1	1			
충북		1		1		
충남	1	1	1	1	1	
전북		1	1	1		
전남	1	1	1	1		
경북	1		1			
경남			1	1		
제주	1					
계	9	15	10	11	5	5

주. 청소년자립지원관 : 청소년쉼터,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을 퇴소한 만19세~24세 이하 청소년. 입소후 보호 기간은 1년 이내. 필요시 6개월씩 2회 연장

(2) 자립지원전담요원

○ 배치 기준 : 권고사항

- 양육시설 : 아동 30명 이상 시 1명 배치, 100명을 초과할 경우 1명 추가 배치

- 가정위탁지원센터 : 15세 이상 자립지원 대상 아동 100명 초과할 때마다 1명 배치

- 그룹홈(공동생활가정) : 8인 이상일 때 1명 배치

○ 업무영역

- 입소아동 원가족 복귀계획서 작성 및 연계프로그램 기획

- 연령별/영역별 자립지원 표준화프로그램 기획, 자립지원 표준화프로그램 평가

- 만15세 이상 아동 자립준비사정 및 자립지원계획 수립

- 진로준비를 위한 상담, 진학 및 취업정보 분석 및 지도

- 취업, 주거, 진학, 생활환경 등의 정보제공 및 서비스 제공, 퇴소 후 사례관리 등

구분	계	아 동복 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지원센터
계	294	247	4	43
서울	40	37	-	3
부산	24	20	_	4
대구	21	20	_	1
인천	10	9	_	1
광주	11	10	_	1
대전	12	11	-	1
울산	3	2	_	1
세종	2	1	-	1
경기	35	24	_	11
강원	14	10	_	4
충북	12	10	-	2
충남	13	12	_	1
전북	17	14	-	3
전남	23	21	-	2
경북	18	15	_	3
경남	27	25	-	2
제주	12	6	4	2

자료 : 보건복지부, 2021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단위 : 명, 개소)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가정위탁지원센터)								
구분	총이시설	자립 전담 요원 배치 시설	종 사 자	자립 전담 요원	보호 아동	총시설	자립 전담 요원 배치 시설	종 사 자	자립 전담 요원	보호 아동	총시설	자립 전담 요원 배치 시설	종 사 자	자립 전담 요원	가정 위탁 아동
청주	4	4	119	4	200	13	-	39	-	77	1	1	11	2	405
충주	1	1	24	1	33	3	-	8	-	9	_	-	-	-	55
제천	1	-	32	-	34	3	-	11	-	15	_	-	-	-	39
보은	-	-	-	-	-	_	-	-	-	-	_	-	-	_	22
옥천	1	1	22	1	46	_	-	-	-	-	_	-	-	-	9
영동	-	-	-	-	-	-	-	-	-	-	_	-	-	-	25
증평	-	-	-	-	-	-	-	-	-	-	_	-	-	-	11
진천	-	-	-	-	-	1	-	5	-	4	_	-	-	-	40
괴산	-	-	-	-	-	-	-	-	-	-	_	-	-	-	11
음성	3	3	58	3	153	1	-	_	-	-		-	-	-	20
단양	-	-	-	-	-	4	-	12	-	15	_	-	-	-	23
계	10	9	255	9	466	24	-	75	-	120	1	1	11	2	660

주. 청주, 자립지원시설(현양원), 종사자 3명, 청소년 13명

자료: 각 시군별 정보공개

4. 보호종료 청소년 자립지원 과제

자립준비는 최적의 시기가 있으나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마음의 근육을 키우면서 어려움과 곤경에 처했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탄력성을 키우는 것. 물질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정서적 지원, 사회적 편견 해소 및 지속적인 관심은 더 중요

○ 보호종료아동·청소년 자립지원조례 제정

- 보호종료연령 상향 조정) 만18세. 핸드폰도 개통할 수 없는 나이
 - 자립에 대한 인식은 대학입학 후, 취업 후 본격화
 - •대학진학과 취업에 따라 보호종료기간이 다름. 20대 후반까지 동일하게 적용
- 적용시설 확대) 아동복지법의 보호종료아동과 함께 청소년복지시설 중 쉼터 퇴소청소년도 동일한 지원 필요

○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

- 자립지원전담요원 및 업무의 중심축으로 보호종료아동 체계적 관리 지원(정보 제공 포함)
- 설치 의무 아니며 업무를 법인에 위탁할 수 있음. 그러나 보호종료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보호종료아동 인권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20.12.24)에 따라 인프라 구축 필요
- 일부지역은 자립통합지원센터가 자립지원전담기관 기능 흡수
- 전담기관과 자립통합지원센터 2개소 모두 없는 지역은 충북 포함 5곳

○ 자립지원 단계별 담당기관 이원화를 통한 체계적인 지원

- 보호종료 전 : 시설 → 보호종료 후 : 자립지원전담기관(맞춤형 사례관리 강화)
- 자립지원전담요원 확충
 - 현행) 업무량 과다, 관리지역 방대. 공동생활가정 미배치 및 높은 이직률(현 업무 부담으로 퇴소아동 5년 동안 관리 어려움)
 - 제안) 공동생활가정 선제적 배치, 시설단위 어려울 경우 광역단위로 배치

○ 자립지원 네트워크 구성(거버넌스)

- 자립을 자립지원전담요원에게만 맡겨둠
- 아동양육시설, 아동보호전담요원, 자립지원전담요원, 지역사회유관기관 등의 긴 밀한 연계협력 네트워크 구축
- 법률, 취업, 진로, 정신건강, 재무설계, 주거, 상담분야 등 포함

○ 자립지원서비스 확대 및 청년정책과의 연계 강화

- 주거서비스 다양화
 - 보호종료 전 : 자립체험관 원내 → 원외 운영(수능이후 2-3개월)
 - 보호종료 후 : 자립통합지원센터(희망디딤돌) 등
- 공공영역 직업체험기회 활성화
 - 자립지원전담요원이 수행하기에는 한계
 - 단순노무직 비중 전국의 2배, 수급자 29.6%(취업자중 저소득자 존재)
 - 공공영역의 자원봉사+직장 체험, 인턴십 체험 기회 부여
 - 정보제공 및 취업연계 지원 활성화 필요
- 심리적·정서적 지원 강화

- 우울, 스트레스, 고독감 해소 및 자존감 향상 : 바우처지원
- 생애단계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청년 니트(NEET) 예방
- 취업자와 대학진학자의 동등한 지원
 - •취업-진학-취업 아동에 대해서도 대학등록금 지원
- 의료 및 긴급지원 : 질병, 사고 등에 따른 긴급 목돈 필요시 지원
- 원가족과의 관계 회복 지원
 - 가족은 자립의 울타리이자 걸림돌로 가족단위의 접근과 지원 필요
 - 친부모와의 관계가 긍정적일 경우 가족재결합, 부정적일 경우 보호방안 마련(관계 단절 법률 지원 및 법적 조치 필요)

○ 자립지원계획 및 자립준비교육 실질화

- 자립지원계획 수립 제고 : 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 미흡
- 교육 예
 - 한 달 알바해서 번 돈으로 살아보는 훈련(용돈보다 큰 돈 써보는 훈련, 사고 싶은 것 사보는 훈련 등)
 - 아껴 쓰라는 교육도 중요하나 잘 소비 및 관리하는 법
 - 저금리로 안전하게 대출받는 법, 신용등급 관리, 대출약정서 작성시 이자 산출법 등
 - 신용카드 10만원 주면서 만들라고 할 때 거절하는 법, 1금융권 이용법
 - 수급자만 신청할 수 있는 이자율 높은 통장 가입 방법 등
 - 음주교육, 조문교육 등
- 퇴소아동 재교육 및 재수강 활성화

○ 사회적 지지체계 활성화를 통한 사후관리 강화

- 1인 1멘토(후견인)+자립지원전담요원(개인상담사) 배치
 - 의미 있는 사람들과 연결된 관계의 질 중요. 시설 선생님들과 협력적이고 긍정적인 관계 유지시 지속적인 연락
 - 연락두절(전화번호 잘 바꾸고 개인정보법 때문에 연락 어려움) 방지. 상담 및 연락 동기 부여 방안 모색
 - 금융후견인 역할(큰 금액 사용시) 및 심리적·정서적 지원

○ 보호종료 청소년 지원정책 홍보

- 보호종료 청소년(당사자) 의견 반영 정책 생산
- 자립지원사업 홍보 및 지역사회 자원 개발하며 사회적 인식 개선





청주시 보호종료 청소년 자립지원 방안 모색 토론회

발행일 2021. 7. 15.

발행처 청주시의회 복지교육위원회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연락처 043-267-0151 cbcitizen@hanmail.net

※본 자료는 충북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